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 구 남영역세권(청파동3가 118-133번지 일대) 및 서빙고역세권(서빙고동 271-18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08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제한지역

구 분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	청파동3가 118-133번지 일대	28,248.4	
	서빙고동 271-18번지 일대	6,298.0	

2. 제한 사유

-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을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함

3. 제한 기간

-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(단, 정비구역 미지정 시 해제)

4. 제한대상 행위

- 건축물의 건축
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 -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 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
 - 「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로 전환
 - 「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
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
- 토지의 분할

5. 제한적용 예외

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-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6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7. 기타사항
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02-2199-74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 게시 예정

○ 지형도면

